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시켜 지방의회 신뢰 제고
3. 주요내용
 - 겸직신고 관련
 - 신고기간 확보를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신고, 관련 서식 활용
 -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사임권고 실시
 -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체계적으로 파악
 - 미신고, 허위 등 부정확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 수의계약체결 관련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명확화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서식을 설정하여 정확한 정보 취득

○ 징계 기준 설정

-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
- 징계사유별로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3. 12. ~ 2019. 3. 18.(7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
| 1. 겸직신고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별지 제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 | | | | | |
|--------|--------|--|------------------|------------------|--|
| 소속정당 | | | 선 거 구 분 | 지 역 구 | |
| 성 명 | 한 글 | | | 비 례 대 표 | |
| | 한 자 | | 생 년 월 일 |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장성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 | | | | | | |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 | 총명 | | | | | | | |
| | | 본인 관련자명 | | | | 본인, 직계존·비속명 | | | |
| | | 배우자 관련자명 | | 유무 | |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 | |
| - | | | | | | | | | |
| 연번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지분율 | 기타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p>※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p> <p>※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p> <p>※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p> <p>※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p> | | | | | | | | | |
|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장성군의회 의원 (인)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장성군의회 의장 귀하</p> | | | | |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p> <p>② · ③ (생략)</p> <p><신설></p> <p><신설></p> | <p>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p> <p>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

<신 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신 설>

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신설)

검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
| 1. 검직신고 위반 |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경고 |
| | ○ 검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경고, 공개사과 |
| |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83조(2항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2. 영리거래 금지 (수외계약체결 제한 위반) | ○ 영리거래금지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 수외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경고 |
| | ○ 수외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경고, 공개사과 |
| |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개정)

|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 | | | |
|--|-----------|------------------|------------------|--|
| 소속정당 | | 본 거 구 | 지 역 구 | |
| 영 향 | 한 글 | | 비 례 대 표 | |
| | 한 자 | 생 년 월 일 | | |
| 배 내 내 국 외 거 주 지 역 | 기관 단체명 | | | |
| | 직 위 | | 재 직 기 간 | |
| | 보 수 | (택일) 연 월 일 | (택일)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p>「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장성군의회의원 (인)</p> <p>장성군의회의장 귀하</p> | | | | |

| 결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 | | | |
|--|----------------------------|---|------------------|---|
| 장성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 | | | |
| 소속정당 | | 선 거 구 분 | 지 역 구 | |
| 성 명 | 한 글 | | 비 례 대 표 | |
| | 한 자 | 생 년 월 일 | | |
| 결 직 내 용 | 기관단체명 | | | |
| | 직 위 | | 기 간 | ~ |
| | 수 행 업 무 내 역 | | | |
| | 분 야 |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
| | 영 리 성 여 부 | 영리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 | |
| | 보 수 수 령 여 부 |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 | |
| 보 수 수 령 액 (연간) | 근로소득 | | | 원 |
| | 근로소득 이외 소득 | | | 원 |
| | 계 | | | 원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p>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장성군의회 의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장성군의회 의장 귀하</p> | | | | |

별지 제2호 서식(신설)

|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 | | | |
|---|--------|------------------|------------------|--|
| 소속정당 | | 선 거 구 분 | 지 역 구 | |
| 성 명 | 한 글 | | 비 례 대 표 | |
| | 한 자 | 생 년 월 일 | | |
| <p>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장성군의회 의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장성군의회 의장 귀하</p> | | | | |

별지 제3호 서식(신설)

장성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 | | | | | | | |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 수의계약체결제한관련자 | 총명 | | | | | | | | |
| | 본인관련자명 | | | | 본인, 직계존비속명 | | | | |
| | 배우자관련자명 | | 유무 | |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 | | |
| 연번 |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자분율 | 기타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합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성군의회 의원 (인)

장성군의회 의장 귀하